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89
----------	-----

제출년월일 : 2000. 8.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부정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등을 공개 (안 제2조 제1항)
- 나. 공개방법은 인터넷·일간신문·시공보·지역신문·지역유선방송·시정뉴스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 (안 제3조)
- 다.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이내에 공개하며,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 (제4조, 제5조)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정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의 대상) ①시장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수질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3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일간신문·시공보·지역신문·지역유선방송·시정뉴스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3일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 · 과 · 소		환정보호과 ☎ 940-4462
입 안 자	환정보호과장	박 철 순
	환경지도담당	박 응 석
	담 당 자	조 윤 욱